

# 공유경제에서의 프라이버시 이슈와 개선방안연구

전 우 천\*

## ◆ 목 차 ◆

1. 서 론
2. 공유경제 등장배경과 프라이버시
3. 프라이버시 개선방안
4. 결 론

## 1. 서 론

전세계는 최근 10년 사이에 공유경제 열풍이 일고 있으며,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경제 모델이 활성화되고 있다. 공유경제는 2008년 하버드대학교의 로렌스 레시그(Lawrence Lessig) 교수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필요성에 의해서 공유하는 활동을 공유경제라고 한다. 지난 2008년 세계 경제위기로 많은 국가에서 저성장, 저소비, 취업난, 가계소득 저하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하자 과소비를 줄이면서 동시에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회 인식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와 정보통신 기술과 모바일 기술의 발전은 개인 대 개인의 거래를 쉽고 편리하게 만들어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거듭 수 있었다.

공유경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네이버2018]. 공유경제는 유형과 무형의 형태를 모두 포함하며, 거래 형태에 따라 크게 1) 쉐어링(Sharing), 2) 물물교환, 3) 협력적 커뮤니티 등의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쉐어링은 소비자들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소유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동차 쉐어링이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형태인 물물교환은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필요한 사람과 교환과 재분배

를 하는 형식으로 주로 중고매매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마지막 형태인 협력적 커뮤니티는 특정 커뮤니티에서 내부 사용자 사이의 협력을 통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유형과 무형 자원 모두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여유 공간을 여행객에게 제공하는 에어비앤비(AirBnB)나 지식 공유 플랫폼의 하나인 위즈돔(Wizdom) 등이 대표적인 협력적 커뮤니티 형태의 공유경제이다.

공유경제는 모두에게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즉, 이용자와 이용자, 이용자와 중개자, 중개자와 중개자 등 사회전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기업에서는 제품 생산과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통하여 사회에 환원을 하거나 배분하는 구조이다. 즉 수익과 배분이 분리된 활동인데 비해서 공유경제 하에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각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활동 자체가 자원의 절약과 환경문제 해소 등의 사회적 기여와 배분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 전체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공유경제는 아직까지 전면적인 상거래 형태로 발전하기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즉 기존의 거래형태와는 달리 개인 대 개인의 거래 형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거래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힘들다. 또한, 거래 당사자간의 신뢰가 부족하여 다양한 거래상의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자칫하면 기존의 경제를 위협할 수 있으며, 기존 경제에 비해서 법적 및 제도적 정비의 미비로 지하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서울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학과

전통경제와 공유경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전통경제에서는 제품과 서비스의 소유의 개념이라면 공유경제에서는 공유의 개념이고 전통경제에서는 자원을 소비 또는 고갈을 시키는 형태라면 공유경제에서는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자원을 절약하는 형태이다. 또한 전통경제에서는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라면 공유경제에서는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 될 수 있으며, 전통경제에서는 경쟁을 통한 이윤추구 형태라 하면, 공유경제에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윈윈(Win-Win)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통경제는 제품의 대량판매를 통한 과잉소비 또는 환경파괴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공유경제는 협력적 또는 합리적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원고에서는 공유경제에서의 프라이버시 이슈를 논의하고 프라이버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장에서는 공유경제의 등장 배경과 프라이버시 이슈를 소개한다. 3장에서는 공유경제하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마지막 4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 2. 공유경제의 등장 배경과 프라이버시

### 2.1 공유경제의 등장 배경

공유경제가 우리 사회와 경제에 등장하게 된 배경은 크게 3가지 즉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및 기술적 요인 등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설명할 수 있다[이장우 2015].

#### (1) 사회적 요인

##### - 인구밀도의 증가

공유경제에서 공유자원을 쉽고 편리하게 공유하기 위해서는 자원공유의 주체와 공유하려는 자원과의 거리가 가능한 짧아야 하며 대도시를 중심으로하는 인구밀도의 증가는 공유경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 지속가능성의 문제

지속 가능성(持續可能性)이란 일반적으로, 특정한 과정이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현재

는 생물학적, 생활 체계와 관련하여 주로 쓰이는 용어이다. 한편 생태학적 용어로서의 지속가능성은 생태계가 생태의 작용, 기능, 생물 다양성, 생산을 미래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한편, 지속가능성은 인간 사회의 환경, 경제, 사회적 양상의 연속성에 관련된 체계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다시말해서, 지속 가능성은 문명과 인간 활동, 즉 사회를 구성하는 수단으로 의도된 개념으로서, 이 개념의 지지자들은 그들의 필요를 절충하고 현재 한도에서 최대한의 가능성을 짜내면서도,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존하고 그러한 이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계획과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속 가능성의 개념은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지구 전체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친다(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지속\\_가능성](https://ko.wikipedia.org/wiki/지속_가능성)). 이러한 의미에서 지속가능성은 환경의 문제를 포함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쉽게 유도할 수 있어 공유경제의 핵심요소가 된다.

##### - 통신수단의 발달

다양하고 빠른 통신수단의 발달의 물류의 이동과 배송에 더욱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드론 기술의 발달로 인간이 도달하기 힘든 극지에 대한 배송도 가능해져서 점차 공유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 - 이타주의

이타주의 즉 타인의 어려움이나 고통에 직면했을 때 타인에 대한 배려는 자신의 자원을 공유할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킨다. 특히, 협력적 공동체 안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심은 공유경제의 참여와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 (2) 경제적 요인

##### - 유희자원의 활용

유희자원을 방치하거나 폐기하기 보다는 재활용하고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부가 수익창출이 가능하다.

##### - 재무적 유연성

자원의 소유주 입장에서는 소유한 자원을 사용을 허락함으로써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비소유주 즉 이용

지는 공유가능한 물품을 구입하는 대신에 다른 제품구입에 투자할 수 있는 재무적 유연성이라는 잇점을 얻을 수 있다.

#### - 새로운 시장의 형성

고급 자동차나 비싼 가구 등 특정한 부유계층만이 소유할 수 있는 제품들이 공유경제환경하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의 경제시장에 더하여 새로운 시장이 형성가능하며 또한 자원의 재사용이 가능하다.

#### - 벤처캐피털 펀드의 유입

공유경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벤처캐피탈의 경우 저렴한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다양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 (3) 기술적 요인

#### - 소셜 네트워크

SNS 등 소셜 네트워킹 기술의 발달은 개인대 개인 즉 P2P 거래가 가능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다양한 참여를 통해서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 - 모바일 장치와 플랫폼

태블릿 PC와 스마트폰 등 다양한 모바일 장치의 개발과 보급은 공유경제에서의 거래와 참여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 - 전자결제시스템

전자상거래 기술의 발달은 빠르고 손쉬운 거래와 지불방법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따라 이러한 결제시스템은 더욱 손쉽고 편리한 방향으로 발전하리라 기대된다.

## 2.2 프라이버시 이슈

### (1) 운송기업의 사례

[한경비즈니스2014]의 신문기사에 의하면 우버의 고

객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사례는 다음과 같다.

즉 2014년 자동차 공유 서비스인 우버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용자 위치 추적 도구인 ‘갓뷰(God View)’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갓뷰는 우버가 개발한 실시간 데이터 추적 도구이다. 창업자인 트래비스 캘러닉(Travis Kalanik)이 공개 석상에서 시연해서 보일 정도로 데이터 추적의 정교함이 우수하다. 우버는 이러한 갓뷰를 통해 우버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 세계 도시의 사용 내역을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다. 당시 운행되고 있었던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도 예외는 아니다. 즉 특정 시간대에 어떤 운전자가 어떤 승객을 태우고 어디로 이동하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는 우버가 사용자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위치를 추적한다는 점이다. 허락 없이 사용자 위치를 추적한 사례는 다양한 기사에서 언급되고 있다. 우버는 사용자의 허락 없이 공개 시연 행사 등을 이유로 승객 위치 데이터를 무단으로 추적해 오고 있었다. 실제로 우버가 버즈피드에 제공한 로그 데이터 목록을 보면 탑승 시간, 제공자, 승객명, 승객의 여정 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갓뷰에는 서울 지역 우버 사용자의 탑승 및 여정 현황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높다.

우버는 “갓뷰는 엄격하게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우버는 2014년 11월 18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승객과 운전자 계정에 대한 접근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데이터 보안 전문가에게 감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 (2) 숙박기업의 사례

[사람인2016]의 기사에 의하면 전세계 숙박공유서비스업체인 에어비엔비를 이용한 여성 이용자가 ‘몰래 카메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독일인 여성인 숙박 이용자는 2013년말 남자친구와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아파트에 약 4주 동안 머물렀다.

아파트를 사적인 공간으로 간주한 이 독일여성은 사적인 대화와 더불어 평소 습관대로 옷을 입지 않고 잤다고 한다. 숙박 사흘째 되던 날 거실 선반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고, 이를 추적한 결과 원격 조정이 가능한 카메라가 숨겨져 있음을 발견했다.

이 독일 여성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한편, 에어비앤비는 임대인들에게 적용되는 약관 즉 “감시 카메라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는 반드시 이를 알리고,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 3. 프라이버시 개선방안

#### 3.1. 프라이버시 보호 법과 제도의 정비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포털사이트 (<http://www.privacy.go.kr>)에 의하면 개인정보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은 15가지가 있다. 괄호안의 내용은 소관부처를 나타낸다.

- ① 개인정보보호법(행정안전부)
- ②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행정안전부)
- ③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
- ④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위원회)
- 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위원회)
- 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 ⑦ 국가인권위원회법(국가인권위원회)
- ⑧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 ⑨ 지방공기업법(행정안전부)
- ⑩ 초·중등교육법(교육부)
- ⑪ 고등교육법(교육부)
- ⑫ 주민등록법(행정안전부)
- ⑬ 전자정부법(행정안전부)
- ⑭ 전자서명법(행정안전부)
- ⑮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한편 개인정보에 관한 행정규칙은 다음과 같은 21가지가 있다. 괄호안의 내용은 법령종류를 나타낸다.

- ① 통계청 개인정보보호 지침(통계청예규)
- ②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③ 중소기업창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중소벤처기업부훈령)

- ④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산림청훈령)
- ⑤ 주민등록발급신청서 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 ⑥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병무청훈령)
- ⑦ 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병무청훈령)
- ⑧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서(행정안전부공고)
- ⑨ 기상청 개인정보 보호지침(기상청훈령)
- ⑩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지침(행정안전부훈령)
- ⑪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 ⑫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법무부훈령)
- ⑬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국토교통부훈령)
- 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훈령)
- ⑮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 ⑯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 ⑰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경찰청예규)
- ⑱ 개인신용평가 모범규준(금융감독원기타)
- ⑲ 환경부 개인정보 보호지침(환경부훈령)
- ⑳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보호지침(농림축산식품부훈령)
- ㉑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경찰청예규)

현재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공유경제 전반에 관한 법령과 행정규칙은 제정되지 않았다. 즉 공유경제 사업자와 이용자들은 개별 사업 또는 개별 이용형태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법 적용이 가능함에 따라 분쟁이 생길 경우에 당사자끼리 원하지 않은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유경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프라이버시 이슈를 정의하고 이를 규정하는 법 제정이 시급한 형편이다. 이러한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공유경제의 특성 즉 개인 대 개인 간(P2P) 거래에 알맞은 법 제정과 더불어 공유경제의 또 다른 특성 즉 에어비앤비와 같은 국경을 초월한 거래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과 상호주의(상대방 국가가 A라는 법을 시행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A와 같은 등급의 법 적용)를 바탕으로 제정해야 한다.

### 3.2. 프라이버시를 위한 기술적 및 관리적 조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www.privacy.go.kr>)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기술적 조치와 관리적 조치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 <기술적 보호조치>

- 접근권한 관리
- 비밀번호 관리
-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및 운영
- 암호화
- 접속기록 보관 및 관리

#### <관리적 보호조치>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 수집, 이용 동의 획득
-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및 공개
- 파기
- 프로그램 유지보수

위에서 제시한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리적 보호조치는 개괄적이어서 공유경제 환경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들어, 접근권한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가 누구까지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숙박공유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전체 숙박공유포털사이트 관리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으며, 또한 개별 숙박업자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털사이트관리자와 숙박업자에게 어떤 권한을 어디까지 부여해야 하며 또한 취급기간을 얼마까지 부여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유경제환경에서는 개인 대 개인의 거래가 많이 발생하고 대부분의 거래가 온라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기술적 및 관리적 조치가 필요하다.

#### <기술적 조치>

- 가입정보의 최소화

즉 주민번호 대신에 I-PIN과 같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 비밀번호 안정성 점검

개별 가입자는 비밀번호를 만들 때 제3자가 쉽게 추

측할 수 없도록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즉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패스워드 안정성 검증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최고로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패스워드 자가진단 도구를 사용해서 안정성이 떨어질 경우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한다.

- 접속기록 보관관리

접속기록 즉 로그(Log)에 대한 일반적인 포맷 즉 접속시간, 사용IP, 접속기간 등 표준화된 포맷이 필요하다면 접속기록을 얼마동안 어떠한 형태로 보관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

#### <관리적 조치>

- 보안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공유경제 포털사이트와 더불어 개별 업소에서 사용하는 접속장치 즉 PC나 모바일 기기에는 반드시 보안 프로그램 설치와 실시간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고객정보의 손상 및 유출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여야 한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의무화

고객이 회원가입을 할 때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를 해야 한다.

- 파기시 공지

회원탈퇴나 업소가 폐업을 할 경우 그 동안 관리했던 개인정보를 파기함을 개별회원들에게 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정보주체인 개별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이용 현황에 대한 고지를 받아야 한다.

### 3.3. 웹사이트 프라이버시 노출점검

정부는 공유경제에 대한 프라이버시 노출 점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웹사이트를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한 경우 주기적으로 프라이버시 노출점검을 확인받아야 한다.

보편적 설계원칙의 보급과 확산에 따라 정부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웹접근성연구소(<http://www.wah.or.kr>)를 운영하여 다양하고 정보통신기술의 기술현황을 반영하는 웹접근성 가이드라인과 모바일접근성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공기관을 중심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웹접근성연구소에서는 접근성 품질인증을 제공하고 웹사이트에서의 접근성을

진단하는 소프트웨어도구를 배포하고 있다.

현재 보안관련 사기업을 중심으로 프라이버시 진단 지침과 진단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배포되고 있다. 이러한 진단 소프트웨어는 주로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 노출을 진단한다. 즉 홈페이지 콘텐츠와 게시판 내에서의 개인정보 진단과 리포팅을 주요기능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유경제하에서 포털사이트와 개별업소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가 개발되어야 한다.

- 프라이버시 보호 지침(가이드라인)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보다 공유경제에 적합한 프라이버시 보호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 프라이버시 점검 도구(소프트웨어)

웹사이트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누구나 쉽게 점검할 수 있고 또한 취약점을 발견하여 취약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공인된 프라이버시 점검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무료 배포가 시급하다.

- 프라이버시 품질 인증

프라이버시 점검 도구를 바탕으로 프라이버시 품질 인증이 필요하다. 이는 공인된 인증이어야 하며, 이를 통과할 경우에만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통과하지 못하면 제재조치를 가하는 등 다양한 품질향상을 위한 지침이 필요하다.

### 3.4. 공유경제 프라이버시 포털사이트 제공

현재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정부의 공식 사이트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개인정보 종합포털(<http://www.privacy.go.kr>)이다. 이 포털의 주요 사업은 개인정보관련 법령 안내,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개인정보보호호관련 연구보고서, 교육자료 및 홍보자료제공을 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개인정보 피해예방교육제공, 개인정보 유출신고 및 개인정보 분쟁조정 등 종합적인 기능을 제공한다. 둘째는 한국인터넷진흥원(<http://www.kisa.or.kr>)로서 주요 사업은 7가지 로서,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정책연구, 인터넷 진흥, 인터넷 주소관리, 개인

정보보호, 사이버보안인재센터, 사이버 침해대응 등이다. 먼저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에서는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정책연구에서는 국내외 인터넷 관련 정보보호에 대한 정책동향 및 미래전망을 통해 ICT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인터넷 진흥은 인터넷산업경쟁력 강화, 정보보호 산업경쟁력 강화,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 구축운영, 사물인터넷활성화 기반조성, 전자거래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등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인터넷 주소관리는 국가도메인 이용을 활성화하며 IP주소와 도메인을 관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보호 정책마련, 위치정보 보호 및 산업활성화, 불법스팸대응, 개인정보 침해사고 신고안내 등을 주요 목표로 한다. 사이버보안인재센터에서는 정보보호 교육서비스 제공 및 정보보호 인력양성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침해대응에서는 다양한 침해사고에 대한 처리와 더불어 사후조치를 제공한다.

한편 공유경제 프라이버시 포털사이트 개설이 시급하며 포털사이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공유경제 프라이버시 법, 제도, 가이드라인 제정
- 프라이버시 보호 교육제공
- 프라이버시 보호 홍보
-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연구보고서 개발 및 배포
- 프라이버시 침해 접수
- 프라이버시 분쟁 조정
- 프라이버시 진단기능 제공
- 기타

### 3.5. 프라이버시 교육기회 제공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해와 침해를 예방하고 침해사고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초·중·고등교육과정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해와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초·중·고등학교 공교육에서는 개인정보보호의 형태로 프라이버시교육이 운영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에 대한 시급성과 더불어 중요성에 비해서 공교육하에서는 하나의 작은 영역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다른 과목 또는 다른 영역과의 형평성을 고

려할 때 교육내용과 교육과정을 재편성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특강, 체험활동, 홍보동영상 보급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또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할 수 있다.

#### 4. 결 론

본 원고에서는 공유경제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이슈를 다루었다. 맨 먼저 공유경제에 대한 전반을 소개하였으며 2장에서는 공유경제의 등장배경과 공유경제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사례를 소개하였다. 3장에서는 프라이버시를 위한 5가지 방안 즉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및 관리적 조치, 홈페이지에서의 프라이버시 노출점검, 공유경제 포탈 사이트의 설립, 마지막으로 프라이버시 교육기회 제공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공유경제가 향후 더욱 활성화가 될수록 관련된 프라이버시 침해사례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프라

이버시를 지나치게 규제할 경우 활성화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프라이버시 보호에 소극적일수록 피해사례가 급증할 수 있다. 즉 프라이버시는 칼의 양날처럼 신중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전체적인 공유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면정책을 잘 활용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1]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어, “공유경제(Sharing Economy)”, 2018.
- [2] 이장우, 공유경제 현황 및 시시점 연구, (재)창조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15
- [3] 한경비즈니스 2014년 12월 8일자 기사, 빅브라더는란에 싸인 ‘우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50&aid=0000036009>
- [4] 사람인 인터넷판 2016년 1월 4일 판, [해외사건] 에어비앤비 ‘몰카’ 피해 논란, [http://www.sagumin.com/sub\\_read.html?uid=10714#05Fu](http://www.sagumin.com/sub_read.html?uid=10714#05Fu)

#### ○ 저 자 소 개 ○

##### 전 우 천

1985년 서강대학교 전산학 학사  
 1987년 서강대학교 대학원 전산학 석사  
 1997년 미국 University of Oklahoma 전산학 박사  
 1998년~현재 서울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 정보영재, 장애인정보화교육, 정보통신윤리교육

